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가단51175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6,409,0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9,0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13.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보증기간 2015. 5. 13.부터 2020. 5.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5. 13. 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20. 8. 25. C을 대위하여 원리금 합계 10,863,82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8. 31. "C은 원고에게 11,004,372원 및 그 중 10,863,828원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결정은 2020. 9. 29. 확정되었다.

나. C은 2019.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28,938,532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설정계약은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설정계약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억 원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설정계약에 앞서 2개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그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314,016,238원(= 213,016,238원 + 101,000,000원)으로 위 가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선순위 근저당권 중 F 주식회사가 권리자인 근저당권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액 101,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회사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로서 설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별지

목 록

1동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9층 호 117.388㎡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13006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069분의 66.613

- 끝 -

